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82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김영환 · 백선희 · 한민수
김동아 · 박용갑 · 박은정
김태선 · 윤종균 · 이재관
김 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을 제한하고, 그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정 금액의 보전을 유예하며,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로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취지가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공적 자질이 있는 사람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단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나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후보자 등이 후보자 등록 당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비용의 보전을 유예하며,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보전비용의 반환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의2 및 제265조의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금액”을 “금액(제4항의 경우에는 보전된 선거비용 전액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었던 후보자(후보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 및 제355조, 제356조의 규정에 따른 횡령, 배임의 죄

⑥ 제4항에 따른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에 입건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선거비용의 보전을 유예하여야 한다.

제26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35조의2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자가 보전 이후 제135조의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보전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이 보전받은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비용 보전 제한 및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5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35條의2(選舉費用補填의 제한) ① ~ ③ (생 략) <u><신 설></u>	第135條의2(選舉費用補填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었던 후보자(후보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u>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u>성폭력범죄</u>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u>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u> 3.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u>뇌물 관련 범죄 및 제355조, 제356조의 규정에 따른 횡령, 배임의 죄</u>

④ (생략)

<신설>

⑤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選舉費用을 補填한 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補填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補填費用額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政黨 또는 候補者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제5항 後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른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에 입건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선거비용의 보전을 유예하여야 한다.

⑦ -----

-----제4항-----

-----제4항-----
-----금액(제4항의 경우에는 보전된 선거비용 전액을 말한다)-----

⑧ -----
-----제7항-----

의 期限 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選舉와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管轄稅務署長에게 徵收를 委託하고 管轄稅務署長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하여 國家에 납입하여야 하며,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에 있어서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徵收를 委託하고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하여 地方自治團體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생략)

<신 설>

[illegible]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35조의2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자가 보전 이후 제135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보전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이 보전받은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u>②</u> ~ <u>⑤</u> (생략)	<u>준용한다.</u> <u>③</u> ~ <u>⑥</u>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	--